

# 석유유통부문 규제합리화에 대한 의견

## - 대한석유협회 -

**대한** 석유협회는 지난 7월 6일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진전에 따른 석유유통부문 규제 합리화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동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 정유업체는 국내 석유류 수요증가 및 수요 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정제시설의 증설 및 시설고도화 사업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내 석유류 안정공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정이 발효되면 석유 유통분야에 대한 개방화, 규제완화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수직적 통합화전략을 추구하는 국제석유자본 및 산유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국내석유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유통부문의 영세성등은 한국 석유유통업 진출에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석유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유업체는 시급히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유가관리제도하에서는 수지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현행

유통구조 하에서는 정유업의 활로개척이 불가한 현실을 감안하시어 정유업의 과제인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귀 부의 적극적인 지원이요망됩니다.

따라서, 정유업체는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정 발효전에 주유소 허가제의 즉각적인 폐지로 전면자유화, 상표표시제의 조속한 추진 및 3·14 조정명령 해지등 유통관리 제반 법률적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 보호는 물론 외국업체의 경쟁우위체제 확립 및 자생력을 갖추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석유유통업의 외국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정유업체가 국내석유수급의 안정과 양질의 석유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수 있도록 별첨과 같이 검토과제별 업계의견을 제출하오니 정유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과제에 대한 의견

제 목	방 법	이 유(내용)	시 기
1. 주유소 허가제한 완화 및 자율화	• 전면 자유화 (신고제)	• 소비자 이용편의, 서비스 개선 및 품질관리의 혜택 • 유통부문의 경쟁부재에 따른 단일한 경영풍토 제거 • 주유소의 이권화방지, 부동실탐투기 억제	• 즉시 시행
2. 상표 표시제 확립	• 석유사업법에 따른 법적 상표표시제	• 정유사간 경쟁효과(품질, 가격, 서비스 등)의 소비자 전달가능 • 석유제품 유통단계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소비자 보호책임의 강화 • 정유사에 의한 유통구조 합리화/ 서비스 개선 제고	• 즉시 시행

제 목	방 법	이 유(내 용)	시 기
3. 3.14 조정명령 개선 및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명령 해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의 정제판매를 영위하는 정유회사로서 고유목적사업유지를 위한 유통업 참여는 필수적임</li> <li>• 정유사에 대한 주유소 설치금지법률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정유사 외의 대기업 주유소 취득사례 집중)</li> <li>• 석유업계의 안정공급기반 강화 및 경쟁기반조성</li> <li>• 정유사소유 주유소선도에 의한 가격, 품질등의 소비자보호 책임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시 시행</li> </ul>
4. 주유소 정유사간 직거래 허용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3단계 유통 구조와 병존하여 직거래도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점의 존재기능은 시장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맡겨야 할 것임.</li> <li>• 주유소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함</li> <li>• 현실적으로 대리점기능은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2, 3항 시행으로 유통질서 확립이후</li> </ul>
5. 휘발유 전용 간이 주유소 및 주차장 주유소 설치허용등 유통망 다원화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유소 허가가 자유화되면 자동 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유소 자유화 시 관련법 개정</li> </ul>
6. 휘발유, 등유 가격 자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휘발유는 전제품 가격 자유화시 찬성</li> <li>• 등유 가격 자유화 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유가 구조상 휘발유가격 경쟁격화로 인한 정유사의 부담이 타유종 가격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타유종 전가 불능시 정유사 손실 부담 가중)</li> <li>• 계절적 수급불균형이 큰 유종으로서 수급안정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2, 3항 시행으로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전면 가격 자유화시</li> <li>• 즉시 시행</li> </ul>
7. 정제시설 개조 및 증설 허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증가 및 수요구조변화추세에 신속대처</li> <li>• 효율적인 시설투자로 경제적인 석유류 안정공급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시 시행</li> </ul>

